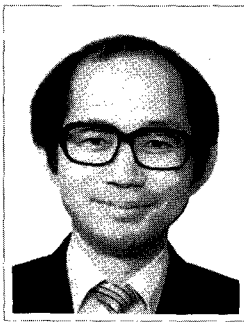


#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의 현황과 개편 동향

김 상 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기술기준실 책임기술원



**경** 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가 주관한 「Reform of Civil Nuclear Liability」라는 주제의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99년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첫째, 97년의 「원자력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비엔나협약」<sup>1)</sup>(이하 'V/C'라 한다) 개정 의정서<sup>2)</sup>(이하 '개정 V/C')와 「보충기금 협약」<sup>3)</sup>(이하 'CSC')의 채택·서명 개방 및 「원자력 민사 책임에 관한 파

리 협약」<sup>4)</sup>(이하 'P/C')과 「브뤼셀보충협약」<sup>5)</sup>(이하 'BSC')의 개정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 따라 원자력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 전보 제도에 관한 포괄적인 검토의 장을 마련하고, 둘째, 중·동유럽과 신생 독립국들이 이들 손해 배상 조약 가입의 중요성을 과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국가들이 조약 가입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장애 사유 및 그 제거 방안을 검토하며,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미래 지향적인 논점, 예를 들면 원자력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공평히 분배할 것인가라는 문제, 핵물질 운송중에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는 원자력 손해의 피해자 보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심포지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는 것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sup>6)</sup>

통상 다른 법 분야에서는 상당 기

간의 구체적 경험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가 뒤이어 마련되는 것이 상례인데,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는 이러한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원자력이라는 거대 과학 기술의 본격적 시작 단계에서부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마련한 법 제도라는 점과, 그 피해의 광역성 때문에 국경을 넘는 손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 정비와 아울러 국제 협약도 동시에 고안되고 개선되어 왔다는 점에 그 특색이 있다.

87년의 체르노빌 사고는 만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며, 그러기에 공평하고 정치(精緻)한 배상 제도의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또 현재 우리 나라는 대북 경수로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KEDO 이사국인 한국·미국·일본·EU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간에 손해 배상 문제가 중요 쟁점으로 다

투어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원자력계에서는 손해 배상 문제를 다룬 논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나 여러 문제점 해결이 요청되고 있는 이 때에 97년 V/C 체제가 개편되고, P/C 체제도 그 주관 기관인 OECD/NEA를 중심으로 개정에 집중적 관심을 보이는 국내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의 손해 배상 심포지엄은 그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원자력 산업계·학계·보험업계·법조계 등의 관련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개최 세션과 5개의 주제별 세션별로 나누어 발표 및 토론이 있었는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세션 I에서는 『국제 민사 책임 체제 개선의 이행』이라는 주제하에 「원자력 손해의 개념」, 「적용 범위」, 「개정 V/C상의 배상 한도액 인상」, 「P/C 개정」 등을 다루었고, 세션 II에서는 『원자력 민사 책임에 관한 전세계적 질서』라는 주제로 「CSC의 주요 특징」, 「새 조약의 작용 원리」, 「전세

계적 질서의 도입 필요성」, 「CSC와 아시아 국가」 등이 논의되었다.

세션 III에서는 『핵물질 운송에 관한 배상 책임』이라는 주제를 놓고 「운송과 관련한 원자력 손해 배상 책임 개관」, 「국제사법적(國際私法的) 관점에서 본 핵물질의 대륙간 운송」, 「운송 관점에서 본 현행 손해 배상 체제의 간격」, 「1997년 개정 V/C 및 CSC상의 해역과 관할 규정」 등이 다루어졌고, 세션 IV에서는 『손해 배상의 실제 문제와 해결』이라는 주제하에 「보상의 주체와 방법」, 「공평한 보상의 분배 - 그 이론과 현실」, 「분쟁 해결의 절차와 비용」, 「미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 책임 보험」, 「PAKS 발전소(헝가리) 보험의 협상과 체결」 등이 논의되었다.

세션 V에서는 『현상항과 과제』라는 주제로 「원자력 손해 배상법의 미래」, 「책임의 집중」, 「재판 관할, 준거법, 재판의 집행」, 「부지 내 재산의 피해」, 「최근의 진전 상황」 등을 논의하였다.

본 참관기에서는 국제 원자력 손해 배상 체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수개

국의 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원자력 손해 배상 체제의 현황**

**1. 손해 배상 체제 일반**

원자력 손해 배상 체제는 원자력 손해의 특성이나 법 목적에 따라서 대체로 ①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 ② 원자력 사업자에게 손해 배상 조치 의무를 부과시킬 것 ③ 국가의 지원 또는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둘 것 등 3가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 무과실 책임, 책임의 집중, 구상권 행사의 제한, 면책 사유의 제한 및 손해 배상 조치의 강제, 국가의 후견적 개입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69년 1월 24일 「원자력손해배상법」(법률 제2094호)과 동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또 배상 조치의 하나로 사업자가 국가에 보상료를 지급하고 정부와 체결하는 원자력

1)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하 협약 원문과 번역문은 경수로지원사업기획단·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손해배상자료집(1999. 7.) 참조  
 2) 정식 명칭은 Protocol to Amend the 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이다.  
 3) 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4) 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of 29th July 1960, as amended by the Additional Protocol of 28th January 1964 and by the Protocol of 16th November 1982  
 5) Convention of 31st January 1963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of 29th July 1960, as amended by the Additional Protocol of 28th January 1964 and by the Protocol of 16th November 1982  
 6) "Reform of Civil Nuclear Liability". OECD/NEA(Legal Affairs), (심포지엄 개최 안내 책자)

손해 배상 보상 계약에 관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이 75년 4월 7일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 법령은 상기한 바와 같은 국제 조약이나 주요 원자력국이 채택하고 있는 원칙을 담고 있는데, 다만 책임의 제한 여부에 관하여는 미국·영국·네덜란드 등의 국가나 관련 국제협약이 유한 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무한 책임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2.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국제 협약

### 가.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국제 협약

원자력 손해 제도는 그 피해의 광역성으로 말미암아 제도의 시작 단계부터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경우를 상정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 처리를 위한 국제 조약이 일찍부터 마련된 바, OECD/NEA 주관의 P/C 체제와 IAEA 주관의 V/C 체제가 그것이다.

이 조약들은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의 양대 체제를 형성하고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담고 있다.

또 이들 조약에는 사업자의 배상

책임 최저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는 손해를 추가로 전보하기 위하여 P/C에는 BSC가, 97년의 개정 V/C에는(동 개정의 정서와 같은 날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아니한) CSC가 각각 있다.

P/C 체제와 V/C 체제를 연결하는 「공동의정서」<sup>7)</sup>(이하 J/P)가 있다.

즉 P/C나 V/C의 어느 하나의 체약국은 자신이 가입하지 아니한 타방 조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상의 이익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 J/P로 말미암아 조약에 의한 보호가 주어지는 원자력 손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대되게 되어 있다.

그 밖에도 원자력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71년 12월에 채택되고 75년 7월 15일에 발효된 「핵물질의 해상 수송에 있어서의 민사 책임에 관한 조약」<sup>8)</sup>과, 62년 5월 25일에 채택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못한 「원자력선 운항자의 책임에 관한 조약」이 있다.

나. P/C 체제와 V/C 체제의 현황  
P/C과 V/C의 기본 내용은 크게 다음 2가지로 되어 있다.

① 각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할 것 ② 국경을 넘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배상 처리의 기본 틀을 설정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전자를 위하여는 원자력 사업자의 엄격 책임 및 책임의 집중, 원자력 사업자의 손해 배상 조치 의무, 정부에 의한 지원 또는 보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후자를 위하여는 재판 관할권·준거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P/C와 V/C의 법제도적 기본 구조는 거의 같다.

#### ① 파리 협약 체제

##### ㉠ 파리 협약

- P/C는 60년 7월 29일 채택, 68년 4월 발효.
- OECD 사무국장이 기탁처
- 비엔나 협약과의 조화를 위하여 64년 개정되었으며(1968. 4. 1. 발효), 계산 단위를 SDR로 바꾸기 위하여 82년 다시 개정되었다(1988. 10. 17. 발효).

##### ㉡ 브뤼셀 보충협약

- 63년 사업자의 책임액과 시설 소재지국의 공적 자금으로 배상한 후에도 전보되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체약국의 각출로 120백만 SDR까지 추가 보상하도록 하는 브뤼셀 보충 협약이 체결(1974. 12. 4. 발효).
- 이 보충 협약은 비엔나 협약과의 조화를 위하여 64년 개정되었으며(1974. 12. 4. 발효), 전체 체약국의 각출에 의한 추가

7) 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8)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Liability in the Field of Maritime Carriage of Nuclear Material

보상액이 82년 300백만 SDR 로 되도록 다시 개정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㉔ P/C는 현재 OECD/NEA 주도로 각국 정부의 전문가 그룹에서 개정 검토중에 있고, 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② 비엔나 협약 체제

㉕ (개정) 비엔나 협약

- V/C는 63년 5월 21일 채택, 77년 11월 12일 발효.
- IAEA 사무국장이 기탁처.
- V/C는 97년 9월 29일 원자력 손해 개념의 확장, 최저 배상 책임 한도 인상, 원자력 손해의 범위 확대, 면책 사유 축소, 인적 손해의 소멸 시효 연장 등을 위하여 개정되었다<sup>9)</sup>(개정의정서에는 99년 7월 29일 현재 14개국 서명, 2개국 비준).

㉖ 보충기금협약

- 97년 9월 29일 서명 개방(99년 7월 29일 현재 13개국 서명, 2개국 비준).
- P/C에 대한 BSC의 필요성과

동일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즉 사업자의 책임액과 공적 기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손해가 있는 경우 채약국의 사후 각출로 추가 전보하기 위한 것이다.<sup>10)</sup>

③ 공동의정서

㉗ 공동의정서는 88년 9월 21일 채택, 92. 4월 27일 발효.

㉘ 체르노빌 사고 이후, 상술한 바와 같이 양 협약을 연결하기 위한 공동의정서(Joint Protocol)가 작성되어 적용 범위의 보편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sup>11)</sup>

④ 양 체제의 비교

P/C는 가맹 대상국이 OECD 가맹국이라는 일정 수준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 제국에 한정되어 있다.

이를 반영하여 손해 배상 책임 금액에 있어서는 일정 범위 내의 금액을 확보하는 채약국의 손해 배상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P/C를 보충하는 BSC에 있어서는 손해 배상 책임 금액을 대폭 인상함과 아울러 가맹국간의 상호 부조에 의한 배상

조치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P/C는 균질의, 수준 높은, 상호 제휴를 요구하는 내용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sup>12)</sup>

이에 대하여 V/C는 국제연합에 가맹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손해 배상 조치를 예로 들면 손해 배상 조치는 요구하나 그 금액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등 대다수 국가의 가맹이 용이하도록 P/C에 비하여 규정이 약간 완화되어 있다.

협약으로서의 보편성 관점에서 보면, 우선 P/C에는 OECD 가맹국 중 14개국이 가맹하고 있다.

이들 14개국은 모두가 유럽 대륙 국가들이므로 OECD 가맹국의 협약이라고는 하나, 결과적으로는 유럽 제국의 협약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V/C에는 99년 4월 현재 32개국이 가맹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발전 도상국이나 중·동유럽 국가이다.

세계 주요 원자력 개발국 중 영국·프랑스·독일 및 스웨덴은 P/C에 가맹하고 있으나, 미국·일본·캐

9) 이 의정서는 1999. 7. 29. 현재 14개국(Argentina, Belarus, Czech Republic, Hungary, Indonesia, Italy, Lebanon, Lithuania, Morocco, Peru, Philippines, Poland, Romania, Ukraine) 이 서명하고 그 중 Morocco, Romania 두 나라가 비준하였다.

10) 이 CSC는 1999. 7. 29. 현재 13개국 (Argentina, Australia, Czech Republic, Indonesia, Italy, Lebanon, Lithuania, Morocco, Peru, Philippines, Romania, Ukrain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 서명하고 그 중 Morocco, Romania 두 나라가 비준하였다.

11) 가입국은 Bulgaria, Cameroon, Chile, Croatia, Czech Republic, Denmark, Egypt, Estonia, Finland, Hungary, Italy, Latvia, Lithuania, Netherlands, Norway, Poland, Romania, Slovakia, Slovenia, Sweden 이다.

12) 廣瀬研吉·神田啓治(京都大學 大學院 에너지科學研究科), 原子力損害賠償制度의 現況과 課題, 『日本原子力學會誌』Vol. 39, No. 1 (1997), pp. 32

〈표〉 파리 협약과 비엔나 협약 체제의 가입국 현황

Paris Convention	Vienna Convention	
Belgium*	Argentina	Mexico
Denmark*	Armenia	Niger
Germany*	Belarus	Peru
Finland*	Bolivia	Philippines
France*	Bosnia and Herzegovina	Poland
Greece	Brazil	Rep. of Moldova
Italy*	Bulgaria	Romania
Netherlands*	Cameroon	Slovakia
Norway*	Chile	Slovenia
Portugal	Croat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Spain*	Cuba	Trinidad & Tobago
Sweden*	Czech Republic	Ukraine
Turkey	Egypt	Uruguay
United Kingdom*	Estonia	Yugoslavia
	Hungary	
	Latvia	
	Lebanon	
	Lithuania	

주) 1. \*표는 브뤼셀보충협약 가입국  
 2. 굵은 글씨는 공동의정서 (Joint Protocol) 가입국

나다·러시아·우크라이나 등은 어느 협약에도 가맹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자력 손해 배상 협약하에 있는 세계 원자력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세계에서 가동되고 있는 발전용 원자로 시설의 기수(1996년 3월 시점에서 약 420기)로 보면, P/C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34%, V/C하에 있는 것이 전체의 약 6%로써 양 협약을 합하여 약 40%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 세계 원자력 시설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양 협약은 다 같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양 협약 체제의 가입국을 표로 정리하면 〈표〉와 같다.

**각국의 동향 분석**

이하에서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 중 일본·러시아·중국·캐나다·한국의 원자력 손해 배상 체

제 개편 동향을 살펴 보기로 한다.

**1. 일본**

일본의 원자력 손해 배상 관련법으로는 원자력손해배상법(Law No. 147, 1961) 및 원자력손해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법률(Law No. 148, 1961)이 있다.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 나라가 이 법제를 충실히 모델로 삼은 때문인듯 하다.

일본 원자력 손해 배상 법령의 주요 내용은 엄격 책임, 시설 운영자에 대한 책임의 집중, 면책 사유의 제한, 배상 조치의 강제, 국가의 후견적 개입 등 조약이나 다른 국내법제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배상 조치에는 배상 책임 보험, 사업자가 정부에 보상료를 납부하고 사업자/정부간에 체결하는 원자력 손해 배상 보상 계약, 공탁 등이 있으며, 배상 조치역은 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용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300억엔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99년 5월 10일 원자력손해 배상법을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배상 조치액을 300억엔에서 600억엔으로 인상한 바, 이는 개정 V/C상의 최저 배상 책임 한도인 3억 SDR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일



본에서는 대략 10년 주기로 배상 조치액을 인상해 왔는데 인상 결정에 있어서는 주요 원자력국의 조치액, 세계 원자력 보험 시장의 인수 능력 등이 고려되었다 한다.<sup>1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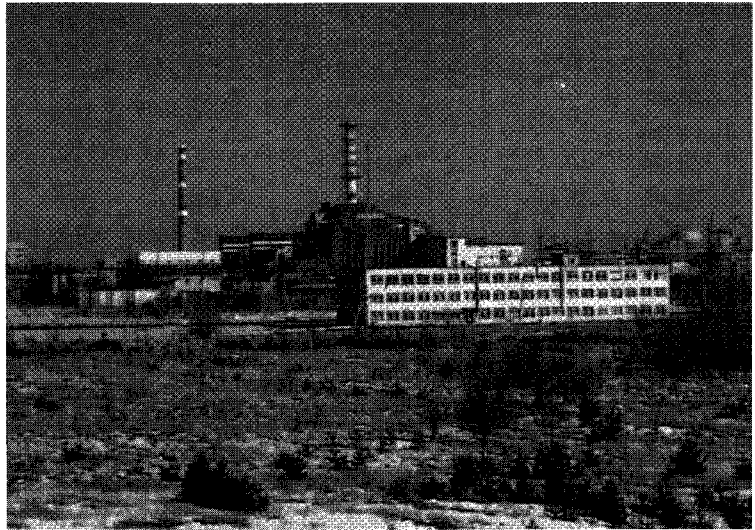
• 다음으로, 일본에서는 원자력 손해 배상 보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매10년마다 그 적용 기간을 10년씩 연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99년 12월 31일 적용 기간이 만료되므로 이번 개정에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10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밖에도 개정 V/C의 내용처럼, 두 가지 면책 사유인 전쟁 유사 사건, 비상한 규모의 자연 재해 중 후자의 삭제제를 검토하였으나 이번 개정에도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 결정에는 화산 활동이 빈번한 일본의 자연적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인적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20년)의 연장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개정 의정서의 30년을 뒷받침할 충분한 이유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하여 이번 개정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본 대표단은 발표 말미에 지역 내 원자력 이용의 급격한 증대를 감



체르노빌 원전. 87년의 체르노빌 사고는 만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며, 그러기에 공평하고 정지(精細)한 배상 제도의 사전 준비가 더욱 중요함을 일깨워 주고 있다.

안하면 국제 조약에 가입하거나 지역적 손해 배상 체제 등의 수립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 2. 러시아

러시아에서 원자력 손해 배상에 대한 법적 규율을 제약하는 것으로는 원자력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특별 입법이 없다는 사실과 사업자가 배상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보험을 구득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러시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중이라고 하며 그 진행 경과와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95년 1월 13일 정부명령 No. 34에 의하여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성안하였다.<sup>14)</sup>

법안은 Federal Law on Nuclear Damage Compensation and Nuclear Insurance라는 이름으로 작성되었는데, 러시아연방 헌법, 민법, 원자력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안 작성의 기본 전제가 되었다 한다.

주요 내용은 책임의 집중 및 제한 제도 채용, 운영자의 배상 조치 선택권, 특정한 경우 배상 총액의 제한, 사전 배상 조치 의무 등이다.

13) Hisashi TANIKAWA, On the Amendment of the Law on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in Japan (심포지엄 발표 자료)

14) Gutsalov A.-Matveev A., CURRENT STATUS OF THE RUSSIAN LEGISLATION ON CIVIL LIABILITY FOR LOSS AND DAMAGE CAUSED BY RADIATION (심포지엄 발표 자료)

손해의 범위에 환경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자연보호법 및 민법에 의해 규율되기 때문이라 하며, 이 초안은 97년 8월 국가 DUMA(의회)에 송부되었다.

정부 초안을 송부받은 국가 DUMA는 정부안과는 별도의 법안을 작성하였는데 정부안과의 차이점은 환경 손해 보상 규정을 포함하며, 2단계의 배상 조치(1단계는 500만 USS 상당의 보험 ; 2단계는 최고액 ~ 500만 USS 간의 차액을 상호 보험)을 규정하고 또 국가 보험 pool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이다.

의회에서는 98년 9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정부(안)과 DUMA(안)을 동시에 회부하였으며, 94년 4월 DUMA 작업부회는 검토를 완료하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2차 청문 준비중에 있는 바, 공청회에서는 2단계 배상 조치의 필요 여부, 국가 보증의 조건, 국가보증기금 체제 확립의 완급 등이 토의되기로 예정되어 있다.

### 3. 중국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중국의 법 환경을 보면, 80년대 이후의 활발한 원자력 추진과 함께 원자력 안전 관련 법령이 다수 공포되었는데, 중국 민간 원자력시설 안전령·중국 핵물질 규제령·원전사고시 응급관리령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또 원자력 개발에 맞추어 손해 배상 관련 법 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간 V/C 개정 및 CSC안 작성을 위한 IAEA 손해 배상 상설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관련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고 한다.

86년 국가위원회는 「원자력 손해 배상 책임에 관한 공식 회신」(Guo Han 1986 No. 44)을 채택하여 이 회신이 손해 배상의 법적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회신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제 조약과 부합하고 있는데, 절대 책임 및 책임 집중, 유한 책임의 원칙(한도 RMB 18,000,000), 정부 지원, 제3자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구상권 인정, 면책 사유의 제한(전쟁 유사 행위, 자연 재해) 등이 그것이다.

원자력 손해 배상 사건은 인민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sup>15)</sup>

중국은 개정 V/C와 CSC가 배상 책임 한도를 높임으로써 한편으로는 피해자 구제를 두터이 할 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원자력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어 원자력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다.

### 4. 캐나다

캐나다의 대표적 원자력 관련 국내법으로는 Atomic Energy Control Act(독립 규제 기관인 AECCB를 설치하고 그 기관에 광범한 재량권을 부여함)와 Nuclear Liability Act가 있다.

이 중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Nuclear Liability Act는 55년 제정되고 76년에 V/C 및 P/C를 모범으로 하여 개정되었는데 동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시설 운영자가 절대적·배타적 책임을 지고 공급자 및 계약자를 면책하도록 하며, 배상 조치를 의무화하고, 금액상·시한상의 책임 제한 제도를 두고 있는 바, 그 금액은 \$75 백만 캐나다 달러로 하고 있다. 대형 사고시 행정 시스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Nuclear Damage Claims Commission(NDCC)을 설치하였다.

소규모 사고시에는 기존의 사법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였다.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시행 5년 후에 개정할 의도였으나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V/C 개정 및 CSC 제정의 추진이 개정 추진 요인이 되고 있다.

96년에는 개정안을 작성하고 관계

15) Li Zhaohui-Wu Aihong-Nan Bin, Brief Introduction of China Nuclear Liability Regime (심포지엄 발표 자료)



인이 이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개정안 작성의 목적을 보면 우선 ① 보상 체계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손해 배상 한도액을 국제 수준으로 인상하고, 배상 조치 수단을 확대하며, 공적 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인적 손해의 시효 기간을 연장하며, NDCC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그것이며, 다음으로 ② 정부 책임을 저감하는 방안으로서 보상 손해를 명확히 하여 정부 보상 필요성을 저감하고, 소규모 시설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들 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충적 책임을 폐지하며, 연방 시설에 대하여 배상 조치를 요구하는 것 등이다. 이와 아울러 ③ 기술적 문제도 해결하고자 하여 NDCC의 작용 등 현행 조항을 짜임새있게 하고 단순화함으로써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적응성을 개선하는 것이었다.<sup>16)</sup>

국경을 넘은 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동 손해배상법이 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어 이들 손해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한편 캐나다는 미국과 상호주의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지리적으로 보아 V/C나 P/C 국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캐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는 그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점, V/C나 P/C에 가입할 경우 사고국에 인접한 국가가 혜택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

는 점을 고려하여 캐나다로서는 미국과의 상호 협력 체결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듯하다.

캐나다는 현행 국제 협약상의 배상 책임 최저 한도가 불충분한 수준(V/C의 경우 US\$ 5백만)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국제 협약 가입국은 아니나 그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1996 Moscow G-7 Summit에서 모든 국가는 원자력 손해에 대한 효과적 배상 체제가 필요함에 동의한 바도 있다.

새로운 체계의 가입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면, 자국의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국외 사고에 의한 국내 피해자의 구제 개선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나, V/C 또는 CSC 가입에 대하여는 ① 캐나다 회사의 해외 공급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② 핵물질 운송자에 유리하다는 점(캐나다는 현재 운송이 많지 않음) ③ 원자력 손해 배상에 관한 국제적 결속을 과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쨌든 캐나다로서는 현재 V/C 개정 내용과 동일한 방향으로 국내법을 개정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며, 국내법 개정 후에 국제 손해 배상 체제에 가입을 고려할 것이다.

## 5. 한국의 V/C 및 CSC 가입의 득실

현재 동북 아시아는 가장 활발한 원자력 추진 지역(일본 53기, 한국 14기, 중국 3기, 대만 6기)이 되었는데 이는 석유 파동을 회피하고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에 방향을 같이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원자력 손해 배상 체제는 인접 국가가 함께 가입할 경우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역내 대부분 국가가 OECD/NEA 회원국이 아니므로 BSC에 가입할 가능성은 적지만 CSC 가입 가능성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V/C에는 필리핀만 당사국이며 타이완이 서명하고 있고, CSC에는 비원자력국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만 서명하고 있다.

아시아국의 과제는 개정 V/C 및 CSC 수준의 국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선결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CSC 가입이 정부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이며, 한국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이는 한국과 사고 발생 국가가 동시에 가입한다는 조건하에서 그러하다.<sup>17)</sup>

가입에 따른 단점으로는 타국 시설의 사고시 우리 나라의 재정 부담이 있게 된다는 점과 국내 배상 조치를

16) Dr. Peter BROWN-David McCauley, A New Global Regime of Civil Nuclear Liability : Canadian Membership i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17) 박기갑, The CSC and Asian States: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of the Korea's Adherence to the CSC(심포지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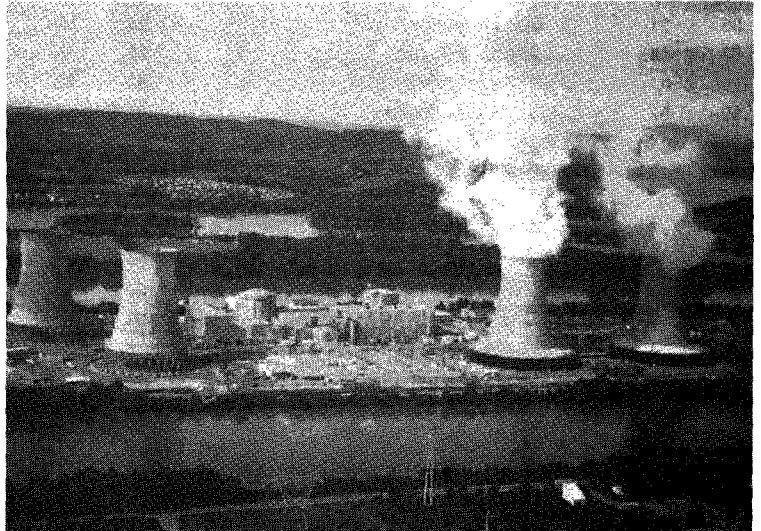
증액 (최소 SDR 150백만 수준)하여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리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사항은 주변국의 동시 가입이 선결 조건이라는 점과 KEDO 사업 추진시 KEPCO 등의 피소 가능성 대비를 위해서도 북한 및 주변국의 동시 가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97년 국내 전문가 그룹이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원자력손해배상법령 개정 시안을 작성한 바, 현재로서는 IMF 경제 위기로 개정을 보류중에 있으나 그 주요 내용은 최저 책임 제한 및 배상 조치 수준을 국제 협약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하고, '원자력 손해'의 개념을 확장하며, EEZ 내 사고에 대하여 연안국 관할권을 인정하고, 면책 사유를 제한하며(심대한 천재지변을 면책 사유에서 제외), 인적 손해의 배상 청구 소멸 시효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 등이다.

### 참가 소감

원자력산업의 높은 안전 기준을 생각하면 원자력 사고는 그 가능성이 적지만 체르노빌 사고에서 보듯이 일단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내적인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원자력 손해 배상 체제의 수립과 개선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가



TMI 원전. 원자력산업의 높은 안전 기준을 생각하면 원자력 사고는 그 가능성이 적지만 그 결과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내적인 해결 방안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에서의 대비책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기울여 온 노력과 의지 외에도 사회 일반의 관심과 중요성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포지엄에서 나타난 평가는 대체로 97년의 V/C 개정 및 CSC의 내용이 원자력 손해 배상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아울러 현행의 원자력 손해 배상제도가 실례상·법론상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많은 논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V/C나 P/C 개정 논의에서 나타난 바를 보면 현행의 손해 배상 체제에 관하여 선진국은 불만족스러운 반면, 개도국이나 동구 국가로서는 현행 수준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었다.

손해는 배상되어야 한다는 정의의 관념, 국경을 넘는 손해가 발생할 가

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행 체제가 피해자의 두터운 구제를 향해 진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의견이나, 개도국이나 동유럽 국가로서는 현실 여건상 재정 부담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위의 논의에 더하여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추진시의 현실적 필요 등을 감안하면 국내 제도가 국제 협약의 수준으로 개정될 필요 사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하여는 주변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국내 손해 배상 제도의 개편과 관련 국제 협약의 가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해외 특히 주변국 동향의 지속적 파악 및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